

“기회발전특구, 경기북부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아야”

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·운영 근거 신설

- 기회발전특구 제정 근거가 되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」 국회 본회의 통과
 - 지난 5월 25일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」(이하 ‘지방분권법’)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이에 따라 여러 시·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임
 - 지방분권법은 7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, 7월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1개월 내 제정 예정(행정안전부 보도자료, 2023.5.25.)
-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방분권법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 절차 진행 중
 -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은 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개월 내 제정 예정
 - 시행령(안) 제20조는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, 기회발전특구계획 포함사항, 지방시대위원회 고려사항을 명시하며,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

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되며, 특구 내 기업에 세제지원 및 규제특례 부여 예정

-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구역을 의미
 - (정의)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으로, 지방분권법 제2조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‘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구역’이라 정의
 - (대상지역)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으로,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(가평, 연천)과 접경지역(김포, 파주, 연천, 고양, 양주, 동두천, 포천)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지역에 포함됨
-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며, 기회발전특구 투자 개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행·재정적 지원 및 세제지원 제공
 - (지정방식) 동법 제23조 제3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며,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시 기업 투자계획과 집적 가능성 등 시행령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
 - (신청대상) 시행령(안)은 신청 대상을 국가산단, 일반산단, 도시첨단산단, 농공단지, 경제자유구역, 연구개발특구, 혁신도시, 기업도시, 지역혁신융복합단지, 시·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
 - (지원내용) 동법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·재정적 지원과,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국세 혹은 지방세 감면 조치 명시
-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각종 세제지원 및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중세트 등 특례 부여 예정
 - (세제지원) 특구 지정시 입주 기업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령(안)에 명시되어 있으며,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(한국일보, 2023.6.6.)
 - (규제특례) 규제혁신 3중세트¹⁾ 및 메뉴판식 규제특례²⁾가 부여될 예정이며,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간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했던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에 도움이 될 전망

1) 규제혁신 3중세트는 ‘규제 신속확인’, 신제품 및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‘실증특례’, 신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기술검증이 완료된 경우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 ‘임시허가’로 구성됨

2)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중앙정부 201개 법률의 규제를 메뉴판식으로 제시, 유예·면제하는 특례로 일반·권한이양·입지·산업특례로 구분됨

경기북부 지역의 발전 기회로, 기업 투자계획 및 지역 산업 기반과 집적 가능성을 고려해 지정 신청 준비 필요

-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계획하는 시·도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를 사전에 파악하고, 지역 산업 생태계와 기업 집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할 필요
 -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(시·도지사)가 기업의 투자수요에 기반하여 특구 입지·특화산업·지원계획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도록 해 기존 특구보다 지역 주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(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, 2023.5.25.)
 - 시행령(안)에는 기회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특히 계획에 특구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, 개발 및 관리방법, 산업 육성전략, 지원계획,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
 - 특구 지정 심의·의결 주체인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, 근로자 정주환경 확보, 부지 및 기반시설(광역교통·정보통신·용수·전력 등) 확보, 개발 경제성, 지역 내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등 고려
 - 따라서 시·도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의 투자 및 규제혁신 수요를 파악하고, 지역별 산업 기반과 산업 클러스터링 가능성, 특구 지정시 지원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구 지정 신청 준비 필요
- 경기도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산업 기반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가능 지역을 고려해 '선택과 집중'의 특구 지정 전략 필요
 - 기회발전특구 외에도, 최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특구 지정 가능성이 확대됨
 - * 평화경제특구 입주 및 투자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, 기업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, 기반시설 지원 등 지원 및 특례 부여
 -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이 다소 중복되므로, 대상 지역별 산업 특성과 지역 산업 연계성, 기업 입지 요건, 기업 투자 수요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적합한 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'선택과 집중' 전략 필요

(정책제언) 경기도 특구 지정 준비 TF 구성, 지역별 특구 적합도 분석, 기업 및 시·군 간담회 개최, (가칭)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등 특구 지정 준비 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 지원 필요

- (경기도 기회발전특구 TF 구성)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를 위해 도내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TF 구성
 - 도내 유관 부서인 규제개혁과, 균형발전담당관, 산업입지과 등이 참여하는 (가칭)경기도 기회발전특구 TF 구성·운영, 향후 지방자치분권법 시행령 제정 및 기회발전특구 신청 고시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필요
 - TF는 대상지역 모색, 기업 규제개선 수요 파악, 규제특례 검토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 수립 지원 기능
- (도내 대상지역 특구 적합성 분석)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 지역 도출 및 지정 계획 수립을 위해 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 및 산업 클러스터링 가능 지역 분석 필요
 - (규제혁신 수요 파악) 기업이 특구 내 입주시 투자에 필요한 규제특례가 무엇인지 기업 규제혁신 수요 파악
 - (산업 클러스터링 가능 지역 분석) 기업 집적 가능성과 입주수요,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, 근로자 정주환경 연계, 부지·광역교통망·정보통신망·산업용수 및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해 산업 클러스터링 가능 지역 분석
- (기업 및 시·군 간담회 및 관련 시·군 연찬회 개최)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 지역 시·군 및 기업 합동 간담회와 유관 시·군간 연찬회를 개최해 특구 지정 전략 및 애로사항 소통의 장 마련
 - (기업-시·군 간담회) 특구 규제특례 수요 파악을 위한 상향식(bottom-up) 접근으로 기업-시·군 간담회 개최
 - (도-시·군 연찬회) 도-시·군 연찬회 개최로 특구 지정 전략 모색 및 애로사항, 의견수렴 등 소통 기회 마련
- (기회발전특구 원스톱 지원센터 마련) 기회발전특구 원스톱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도내 기업 및 시·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 단계를 지원하며, 기업과 중앙정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필요
 - (가칭)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원스톱 지원센터를 조직하여 도내 시·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 단계를 지원하고, 특구 운영 중 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필요
 - 특구 신청 및 지정 단계부터 시작하여, 특구 운영 중에도 기업이 부여받는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결해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중앙정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역할